



공산품 안전관리에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

-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개정(안) 공청회 개최 -

- 앞으로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신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스스로 선언하는「자기적합성선언제도」가 도입되는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가 혁신적으로 개선된다.

- 이외에도 안전위해성이 높은 일부 품목은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병행하는 안전인증으로 집중 관리되고
- 권장사항이었던 품질표시제도는 꼭 필요한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되며
- 법적 안전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언론 등에 공표토록 하는 위해경보 발령제도가 신설되는 등 실효성이 입증된 선진형제도로 대폭 개선하려는 것임

- 기술표준원은 이를 위해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(안)」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2일 입법예고하고
 - *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정 주요내용 : 붙임 1
- 산업체, 일반 시민 및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13일(목) 오후 3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.

<붙임 1>

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정 주요내용

- ① 안전검사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전환
 - 모델별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병행 실시
 - 의무자 : 제조업자(외국업자는 국내 대리인이 신청 가능)
 - 대상은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거나 인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하되 관리 대상을 최소화



- 어린이보호장치, 예초기날, 압력솥, 자동차용 안전유리 등
- 불량제품은 개선·수거·파기 등 리콜명령

② 자기적합성선언제도 신설

- 제조·수입업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 신고후 판매 개시
 - 신고 시 공인시험성적서 첨부(유효기간 : 3년)
- 대상은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우려가 있는 일반 안전 품목으로 제품시험단으로도 안전판리가 가능한 것
 - 예) 세정제, 물후지, 가스라이터, 합성세제, 자동차 타이어 등

③ 품질표시제도 의무화

- 제조·수입업자는 표시기준(성분, 규격, 용도 등)에 적합하게 품질표시를 한 후에 판매 개시
- 대상은 소비자에 의한 품질 확인 및 사용상 안전확보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
 - 예) 의류, 귀금속품, 화학제품, 생활용품 등
- * 외국의 사례
 - 일본 : “가정용품품질표시법”에 의거 품질표시 의무제도 운영(섬유제품 등 88품목)
 - 미국·유럽 : 유해물질함유 제품, 의류, 귀금속품 등에 품질표시

④ 위해경보 발령제도 신설

- 위해성이 입증된 신종 제품 등의 경우에는 언론·정보당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안전위해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 검토
 - 제조(수입)·판매업자에게는 리콜을 권고
- * 외국의 사례
 - 미국, 유럽 등은 위해경보 발령제도 운영 중
 - 미국 킷보드, 캐나다 보행기, 유럽 환경호르몬함유 완구



5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

- 어린이제품에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
 - 유해화학물질, 내분비계 장애물질 함유 어린이제품이 조사·확인된 경우에는 언론매체 또는 정보망을 통하여 위해경보 발령, 제조·수입업자에게는 리콜을 권고
- 어린이보호포장 제품의 안전관리체제 보완
 -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 신고 후 안전마크를 표시하여 판매 개시
 - 불량제품은 개선·수거·파기 등 리콜명령

6 사후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정비

- 시·도 위임사무인 리콜명령은 시·도의 고유사무로 전환
- 시판품조사 업무는 시·도와 산자부 공동수행
 - 시·도는 관할지역 불법·불량제품 및 유통업소 단속
 - 산자부는 전국적인 안전망, 통관자료 분석을 통한 선별적 조사

7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운영

- 현행 시행령상의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
 -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로 개명
- 공산품 안전관리 정책·계획의 심의,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부처간 조정 등을 담당

8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

- 안전인증 관련 이행 위반
 -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
- 자기적합성선언 및 품질표시 관련 주요사항 위반
 -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신설 